



재정경제부

보도참고자료

- 풍요로운 나라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
신뢰받는 재정부

보도일시
2006.12.19(화) 배포시

생 산 일	2006.12.18(월)	생산부서	국고국 회계제도과
담당과장	장훈기 과장(T:2150-2460)	담 당 자	조영욱 사무관(T:2150-2463)

제 목: 국가회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

정부는 「국가회계법 제정안」을 2006. 12. 19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음

주요 내용

- 현행 단식부기·현금주의 회계와 더불어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를 국가회계에 도입
- 회계처리와 그 결과보고에 준거가 될 회계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하여 제정·운용토록 함
- 각 중앙관서별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새로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토록 함
-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
- 중앙관서 및 국가차원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용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보고서를 작성·제출

※ 동 법은 08.1.1부터 시행

<첨부> : 「국가회계법 제정안」 주요 내용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「국가회계법 제정안」 주요내용

①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

- 현행 단식부기·현금주의 회계와 더불어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를 국가회계에 도입
- 동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“재무회계”로 정의하여 현행 수입·지출 중심의 “현금회계”와 병행 운용

② 국가회계의 처리기준 마련

- 회계처리와 그 결과보고에 준거가 될 회계기준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위임하여 제정·운용토록 함
- 동 회계처리 기준은 현행 현금주의 회계와 더불어 새로이 도입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포괄

③ 회계책임관의 임명

- 각 중앙관서별로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새로운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토록 함
 - ※ 현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재무관·지출관 등 업무별로 구분되어 있으나, 복식부기·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 그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업무가 증가되어 이들을 총괄·관리할 책임자가 필요
- 회계책임관은 회계·결산 정보를 관리하고 회계·결산의 결과를 분석하는 등 소속 중앙관서의 회계·결산 업무를 총괄
 - ※ 각 중앙관서별 업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통한 지정도 가능

④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

- 국가회계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
- 동 위원회는 국가의 회계제도와 그 운영 및 국가회계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.

⑤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

-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재무보고서를 작성·제출
 - 일반회계·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,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
-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재무보고서를 작성
 -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

※ 「국가재정법」상의 현금회계 결산절차 및 일정과 동일